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46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31.

발의자 : 신동근 · 소병훈 · 김현권
서영교 · 오영훈 · 민홍철
윤일규 · 서형수 · 이동섭
박찬대 · 이철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,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,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.

이에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하여야”를 “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<u>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10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하고</u> <u>그 결과를 공표하여야</u>-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